

비상임연구위원 운영규칙

[1996. 3. 29
규칙 제20호]

- 일부개정 1999. 6. 16 규칙 제73호
2000. 2. 7 규칙 제86호
2000. 8. 24 규칙 제96호
2001. 4. 25 규칙 제103호
2002. 2. 14 규칙 제117호
2002. 11. 8 규칙 제123호
2002. 12. 18 규칙 제125호
2004. 5. 20 규칙 제160호
2005. 1. 14 규칙 제173호
2008. 5. 7 규칙 제209호
2009. 12. 14 규칙 제230호(하부조직및사무분장규칙)
2012. 6. 4 규칙 제260호
2014. 10. 20 규칙 제286호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전부개정 2016. 12. 30 규칙 제314호
일부개정 2017. 12. 28 규칙 제325호
일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342호
일부개정 2020. 4. 1 규칙 제348호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4호(보수규정)
일부개정 2022. 12. 21 규칙 제361호
일부개정 2023. 3 .2. 규칙 제365호
일부개정 2023. 8. 24. 규칙 제375호
일부개정 2023. 11. 3. 규칙 제382호
전부개정 2024. 3. 4. 규칙 제389호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25. 12.11. 규칙 제41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10조 및 인사복무규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비상임연구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2025.12.11.)
- 제2조(적용범위)**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 및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조(정의)** 비상임연구위원이라 함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 수행 및 중요연구과제의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자격기준)**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때의 자격기준은 [별표1]을 따르며, 결격사유 기준은 인사복무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 제5조(위촉 등)**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서장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 제6조(계약 등)** 비상임연구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및 업무 등을 명확히 한다.
- 제7조(기간)** ①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당해 연구 성과품의 납품일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면직 등) 비상임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인사복무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무 이외의 신병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촉의 필요가 있을 때

제9조(변경사항 등 통보) 해당 부서장은 소관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상근 여부) 비상임연구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장의 승인 하에 상근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등)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2]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연구위원 대상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저명도, 상근근무일수 등에 따라 추가로 10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비상임연구위원의 월수당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되, 위촉기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급일)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경비지원등) ① 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필요경비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경비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 경비

제15조(임무) 비상임연구위원은 부여된 직책이나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 발생된 특허권 등 제반 지적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사용, 발표할 수 없다.

제17조(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4.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상임연구위원 직급별 위촉자격 기준

직 급	위 촉 자 격 기 준
선임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2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선임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15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연구위원 ‘가’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연구위원 ‘나’급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7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연구원	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 2]

비 상 임 연 구 위 원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선임연구위원 ‘가’급	1,000,000원
선임연구위원 ‘나’급	900,000원
연 구 위 원 ‘가’급	800,000원
연 구 위 원 ‘나’급	700,000원
연 구 원 급	600,000원

※ 대상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저명도, 상근근무일수 등에 따라 추가로 100%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비상임연구위원 위촉계약서

계 약 자 :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쌍방은 다음과 같이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1. 위촉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촉 직 급	위 촉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참여연구 과제명

2. 계약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3. 피계약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한다.

4.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촉후에 연구원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연구원에서 부여한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위촉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위촉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마.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법적조치 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5. 위촉계약후 피계약자에게 계약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계약당시 피계약자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자는 본 위촉계약 해지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에 의한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계약직 운영규칙 [1998. 7. 31] [규칙 제53호]

전부개정 2012. 3. 15 규칙 제255호
일부개정 2015. 4. 7 규칙 제29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319호
일부개정 2017. 6. 26 규칙 제322호
일부개정 2018. 4. 1 규칙 제328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19. 1. 9 규칙 제335호
일부개정 2019. 9. 10 규칙 제343호
일부개정 2020. 4. 1 규칙 제349호
일부개정 2022. 7. 4 규정 제184호(보수규정)
일부개정 2023. 3. 2 규칙 제364호
일부개정 2023. 6. 1 규칙 제370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23. 6. 30 규칙 제373호
일부개정 2023. 8. 24 규칙 제374호
전부개정 2024. 3. 4 규칙 제390호
일부개정 2024. 12. 19 규칙 제407호
일부개정 2025. 2. 24 규칙 제408호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40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2025. 12. 11 규칙 제419호(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제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계약직 직원의 채용자격·계약기준·근무내용 및 처우 등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소속 계약직 직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2025.12.1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채용하는 초빙연구원 및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규정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직원의 수) ① 계약직 직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산정하고 그 내용을 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되, 그 수는 「직제규정」의 [별표 2]에 따른 연구원 전체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원장은 연구원의 수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29조에 따른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 전체 정원을 초과하여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조(자격기준) ① 계약직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결격사유 기준은 인사복무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조(채용 등)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공고기간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제5조의2(합격자 선정) ① 계약직 직원 합격자 선발 기준에 대한 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예비 합격자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2.19.]